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17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14가단5107454 부당이득금
원 고	1. 파산자 ○○○○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2. 파산자 ○○○○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
피 고	○○○시
변 론 종 결	2014.10.16.
판 결 선 고	2014.11.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파산자 ○○○○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에게

41,460,960원, 원고 파산자 ○○○○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에게

21,297,600원 및 위각 금원에대한 2014. 5. 14.부터2014. 11. 14.까지는 연5%의, 각 그 다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연20%의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.

본 판결문은 관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17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주식회사 ○ ○ 종합개발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은 2006. 9. 18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주식회사 ○ ○ ○ ○ 신탁(이하 ○ ○ ○ 신탁'이라고 한다)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(이하 '이 사건 담보신탁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함과 아울러 그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.

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소외 회사가 위탁자 겸 채무자, ○ ○ ○ 신탁이 수탁자, ○ ○ ○ ○ 저축은행 주식회사(이후 ○ ○ ○ ○ 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, 이하 '○ ○ ○ ○ 은행'이라고 한다) 및 ○ ○ ○ ○ 저축은행 주식회사(이후 ○ ○ ○ ○ 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, 이하 '○ ○ ○ ○ 은행'이라고 한다)가 신탁원본의 공동 우선수익자(소 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)로 되어있었다.

나. ○ ○ ○ ○ 은행, ○ ○ ○ ○ 은행 및 소외 경기○ ○ ○ ○ 은행 주식회사는 2008. 11. 26. ○ ○ ○ 신탁과 사이에,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10번, 11번, 13번 내지 17번, 19번, 20번, 23번, 33번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신탁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 여 매매대금을 6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 결하고, 그 무렵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(○ ○ ○ ○ 은행 100분의 50.81 지분, ○ ○ ○ ○ 은 행 100분의 26.1 지분, 소외 ○ ○ ○ ○ 저축은행 주식회사 100분의 23.09지분)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(2008. 12. 26.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3조에 의하면,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취득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액의 1,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(통상의 부동산 등록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,000분의 20),

본 판결문은 법원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17

같은 법 제260조의3 제1항에 의하면, 부동산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라. 그런데 ○○○○은행 및 ○○○○은행은 위와 같이 우선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2008. 12. 1. ○○시의 위임을 받은 ○○시 ○○구청장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가액의 1,000분의 20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(이하 '이 사건 신고납부'라고 한다)하였다.

	과세표준	등록세 (1,000분의 20)	지방교육세 (등록세액의 100분의 20)	합계(단위 원)
○○○○○은행	3,455,080,000	69,101,600	13,820,320	82,921,920
○○○○은행	1,774,800,000	35,496,000	7,099,200	42,595,200

마. 이에 ○○○○은행 및 ○○○○은행은 2013. 11. 25. ○○구청장에게 각 과납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, ○○○청장은 2014. 1. 23.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납분으로 ○○○○은행에게 41,460,960원, ○○○○은행에게 21,297,600원을 각 부과 취소 통지 하였다. 그런데 이후 ○○○○은행 및 ○○○○은행이 ○○구청장에게 위 부과 취소된 과납분의 환급을 요청하자, ○○○청장은 2014. 2. 25. 부과제척기간이 2013. 12. 1.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.

바. 한편, ○○○○은행은 2013. 5. 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파산자 ○○○○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, ○○○○은행은 2013. 4. 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17

선고를 받아 원고 파산자 ○○○○ 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 주장 요지

○○○○ 은행 및 ○○○○ 은행이 구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율을 1,000분의 10이 아닌 1,000분의 20으로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, 납부한 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이고,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 당하므로, 피고는 ○○○○ 은행 및 ○○○○ 은행이 각 과납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 요지

○○○○ 은행 및 ○○○○ 은행이 구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율을 1,000분의 10이 아닌 1,000분의 20으로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를 신고, 납부한 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가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,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○○○○ 은행 및 ○○○○ 은행이 ○○○ 청장에 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납한 2008. 12. 1.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인 2014. 4. 25.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3. 판단

가. 당연무효인지 여부

(1) 관련법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17

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고,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).

한편, 조세의 신고납부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,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.

(2) 사안에 적용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우선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율(부동산 가액의 1,000분의 10)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, ○ ○ ○ ○ 은행 및 ○ ○ ○ ○ 은행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(부동산 가액의 1,000분의 20)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,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신탁재산인 사실 및 ○ ○ ○ ○ 은행 및 ○ ○ ○ ○ 은행이 우선수익자라는 사실은 등기부 내지 신탁원부에 의해 공시되어있는 점, 구 지방세법 제133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17

는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한 점, 조세법률관계는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단순한 금전급부관계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상의 금전급부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일반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, 이 사건 신고납부도 마찬가지로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점, 조세법률관계의 경우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은 체납처분이라는 자력집행력에 의해 국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, 납세의무자는 법률상의 구제절차 등을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처분의 유·무효를 조기에 확정시켜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,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도 명백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봄이 상당하다.

나. 소멸시효 완성 여부

(1) ○○○○은행 및 ○○○○은행이 2008. 12. 1.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고, 구 지방세법 제30조의 5 제2항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소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반 하여,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. 4. 25. 이 사건 소를 제 기하였다.

(2) 한편,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(준법률행위)로서,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(대법원 2003. 5. 13. 선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17

2003다16238 판결 등 참조), 갑 제7호증의1·2의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들은 이 사 건 신고납부일인 2008. 12. 1.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. 11. 25. ○ ○ ○ 청장에 게 이 사건 신고납부에 경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납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의 환금세액에 대한 경정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경정청구 당시 원고들이 경 정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였고, 환급세액 역시 확정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적시하였으 며, 그 환급을 위한 계좌번호까지 기재하였던점등에 비추어보면, 위2013. 11. 25.
자 경정청구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원고들이 위 최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4. 4. 25.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, 2013. 11. 25.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(민법 제174조).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, 원고 파산자 ○ ○ ○ 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○ ○ ○ 은행이 납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액 82,921,920 원에서 정당한 세액인 41,460,960원(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○ ○ ○ ○ 은행의 지분 가액 3,455,080,000원 × 0.01 + 3,455,080,000원 × 0.01 × 0.2)을 공제한 나머지 41,460,960원(82,921,920원 41,460,960원), 원고 파산자 ○ ○ ○ 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에게○ ○ ○ 은행이 납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액 42,595,200원에서 정당한 세액인 21,298,400원(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○ ○ ○ ○ 은행의 지 분 가액 1,774,800,000원 × 0.01 + 1,774,800,000원 × 0.01 × 0.2)을 공제 한 나머 지 21,298,400원(42,595,200원 - 21,298,400원)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17

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. 5. 14.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4. 11. 14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은혜